

## 신구조문 대비표

\* 여신관련 총 2개 약관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변경전	변경후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	<p>제8조(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)</p> <p>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, 은행은 제1호, 제6호, 제4호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,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,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,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신설</p>	<p>제8조(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)</p> <p>① ~③ (현재와 같음)</p> <p><a href="#">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,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a></p>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	<p>제15조(위험부담 · 면책조항)</p> <p>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·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·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,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, 어음 · 증서 등과 도장 · 서명에 관하여 위조 · 변조 ·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,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 <a href="#"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a></p>	<p>제15조(위험부담 · 면책조항)</p> <p>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·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·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,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, 어음 · 증서 등과 도장 · 서명에 관하여 위조 · 변조 ·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,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. <a href="#"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a></p>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	<p>제18조(통지의 효력)</p> <p>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,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</p> <p>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<a href="#">다만,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a></p>	<p>제18조(통지의 효력)</p> <p>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,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.</p> <p>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<a href="#"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a></p>

약관명	해당약관 조항	
	변경전	변경후
근질권설정계약서(예적금용,수익권용,유가증권용)	<p>제 4 조 위험부담, 면책조항</p> <p>(2) 채권자가, 담보증서(통장), 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 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, 변조,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.</p>	<p>제 4 조 위험부담, 면책조항</p> <p>(2) 채권자가, 담보증서(통장), 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 또는 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 한 때에는 증서 등과 도장 또는 서명에 관하여 위조, 변조,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.  <a href="#">다만,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a></p>